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

제출년월일 : 1998년 2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안 제28조의4)

조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